#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5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 박성민·구자근·이헌승

김위상 • 박덕흠 • 강승규

서일준 • 이상휘 • 박상웅

강민국 • 박정하 • 김승수

김희정 · 최보윤 의원

(14인)

####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 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 의3)
  -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은 대통령령에 위임
-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4)
  -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

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있는 근거를 신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 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 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
  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
  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할 수 있다.
  -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
	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
	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
	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u> 것을 말한다.</u>
<u>&lt;신 설&gt;</u>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
	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
	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의 회사를 말한다.
<u>&lt;신 설&gt;</u>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
	<u>한 자를 말한다.</u>
<u>&lt;신 설&gt;</u>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
	자등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
	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
	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신 설>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 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 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 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 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 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 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 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

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 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 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 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 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

<신 설>

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 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 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 기 위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u>가를 할 수 있다.</u>

-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
   ·겸임·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